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4년 9월 일 (제 회)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4년 9월 일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4년 9월 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현행 3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는 위원회의 자문위원을 예외적으로 3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자문위원의 전문 분야에 맞는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자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자문위원을 3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안 제43조제2항)
- 기존의 제43조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안 제43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해당없음
- 관련부서 협의 : 위원회 의견 조회 완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3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된 자문위원의 직무내용과 수당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3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자문위원의 직무내용과 수당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43조(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된 자문위원의 직무내용과 수당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